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 3. 16 선고 2020가단83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론 종결 2021. 2. 16

판결 선고 2021. 3. 16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658/7126지분,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7지분에 관한 2020. 2. 19.자 상속재산분할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제1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 5. 6. 접수 제89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은 원고가 발행한 신용 카드를 이용하였는데 그 신용 카드 이용대금은 13,987,332원과 그 중 5,668,946원에 대하여는 2019. 4.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7%, 7,804,429원에 대하여는 2019. 4.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5%의 비율에 의한 돈이다.

나. E는 2020. 2. 19. 사망하였고(이하 'E'를 '망인'이라한다), 배우자 D, 자 피고, F이 망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상속인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을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약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 의의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면, D이 고율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의 유일한 재산인 점, D은 망인의 배우자인 점, D의 적극재산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증명이 없는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상속지분은 D의 유일한 재산으로 추정된다.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약정으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무상

이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속포기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약정은 상속의 포기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판결 참조). 그러나 민법 제1041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 D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 없이 상속재산분할협약에 참여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0으로 약정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1041조에서 정하는 상속의 포기로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유증 주장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증재산으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판결).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주는 행위인데, 망인이 법정 요건과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선의 주장

피고는 당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약정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D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판결 참조), 피고의 선의(공동담보가더욱 부족하게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점)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약정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남인수

별지